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4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2.

발 의 자 : 김정호 · 허종식 · 박 정
이연희 · 허성무 · 이수진
김남희 · 박용갑 · 임미애
김남준 · 박해철 · 안태준
정성호 · 윤후덕 · 서왕진
전진숙 · 전은수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청년 미취업자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지원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운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·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5 신설 등).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5(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고용노동부장관

은 청년 미취업자의 파악, 상담,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·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(이하 “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수집·보유·이용할 수 있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·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·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정보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 및 졸업 여부

3.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
자등록에 관한 정보

4.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에 관한 정보

5. 그 밖에 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에서 취급하는 개
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4조의 제목 중 “공표”를 “공표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
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
신설한다.

①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하여 실업의 장기화 및 구직단념을
예방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파악하고 지원하도록
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5(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 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파악, 상담,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·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(이하 “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수집·보유·이용할 수 있다.</u> <u>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·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·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</u>

제14조(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
및 지원계획 공표)
<신 설>

에 따라야 한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에 따
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정보
 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
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
따른 학교의 재학 및 졸업 여
부
 3.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
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
 4.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의3에
따른 간이지급명세서에 관한
정보
 5. 그 밖에 청년미취업자지원정
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
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정보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미취
업자지원정보시스템에서 취급
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
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
다.

제14조(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
및 지원계획 공표 등)
①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
하여 실업의 장기화 및 구직단

① · ② (생략)	<u>념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파악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② · 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	---